

2024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 목 차 -

· 지원자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3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 전형 일정	6
· 입학정원 2%이내 전형	
- 영주교포 자녀	7
- 해외 근무 공무원의 자녀	8
- 해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9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로자의 자녀	10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11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12
- 자영업자의 자녀	13
- 선교사의 자녀	14
·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전형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5
- 북한이탈주민	15
· 전형방법	17
· 자격기준	18
· 전형료 및 환불	21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22
· 재외 한국학교 안내	23
· 지원자 유의사항	24
· 대학생활 안내	27
· 학과사무실 및 행정부서 전화번호 안내	29

삼육대학교 입학처

문 의 전 화 : 입학관리팀 (02) 3399 - 3377~3379
전 송 (FAX) : (02) 3399 - 3382
홈 페이지 : <http://ipsi.syu.ac.kr>

■ 지원자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원서 접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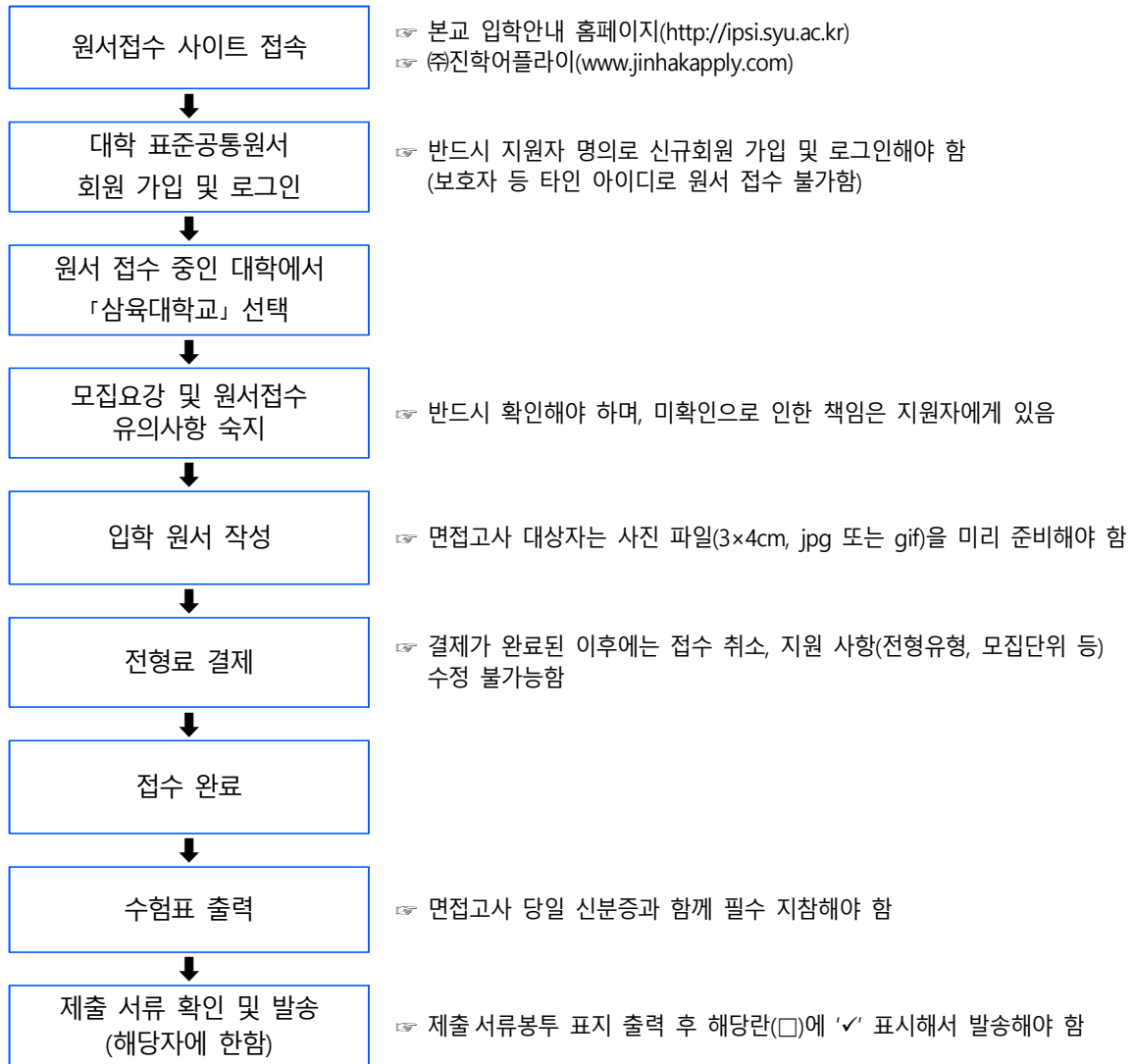
가. 접수 기간 : 2023. 7. 3.(월) 10:00 ~ 7. 7.(금) 17:00 (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 접수 없음)

다. 접 수 처 : (주)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라. 결제 방법 : 접수사이트(www.jinhakapply.com) 내 결제방법 참조

마. 접수 절차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시 면접고사 해당자는 반명함판 사진(3×4cm)을 입학원서 사진란에 등재(upload)해야 하므로, 사전에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사진 파일을 저장·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전형료 결제(입금)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3)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지원사항(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등)변경 및 접수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 변경 또는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할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4)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오류 등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5)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지원 자격과 모집단위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증빙서류를 입학처로 제출).
- 6) 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

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는 지원자가 즉시 입학처(02-3399-3377)로 통보해야 합니다.

- 7)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연락 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8) 모든 지원자는 원서 접수 후 사진이 함께 출력된 수험표를 전형 당일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에는 접수한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화면에서 재 출력하면 됩니다.
- 9) 모든 지원자는 온라인 접수 시 '지원자동의서' 내용에 동의해야 원서접수가 진행됩니다.

■ 지원자 동의서 내용

1. 나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설립된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과정 및 채플 등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나는 건강생활 원리에 따라 음주, 흡연, 마약 등 인체유해물질과 관련하여 규정한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사.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선발 관련 사항

- 1)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 대학별 고사에 결시(포기)한 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4)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5)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일괄 사정합니다.
- 6) 반영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 7) 원서 및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이 취소됩니다.

자. 온라인 원서접수 장애 관련 문의처

▶ (주)진학어플라이 전화: 1544-7715 / 팩스: 02-735-7715 / 홈페이지: www.jinhakapply.com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간[2023. 7. 7.(금) 17:00] 정각에 온라인 접수가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시간 경과 후까지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2%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70	7명 이내	적정인원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제외)
	항공관광외국어학부	동양어문화전공	40	4명 이내	
		항공관광전공			
	글로벌한국학과		30	3명 이내	
	경영학과		60	6명 이내	
	유아교육과		35	미모집	
간호대학	간호학과		69	6명 이내	
약학대학	약학과		30	미모집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40	4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30	3명 이내	
	보건관리학과		30	3명 이내	
	상담심리학과		40	4명 이내	
	체육학과		36	3명 이내	
	식품영양학과		46	4명 이내	
미래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61	6명 이내	
		소프트웨어전공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30	3명 이내	
	인공지능융합학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100	10명 이내	
		인공지능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전공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융합공학과		30	3명 이내	
	화학생명과학과		73	7명 이내	
	동물자원과학과		30	3명 이내	
	환경디자인원예학과		75	7명 이내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4년제)		10	1명 이내	
	건축학과(5년제)		39	3명 이내	
	아트앤디자인학과		70	7명 이내	
	음악학과		45	4명 이내	
신학대학	신학과		38	3명 이내	
총 계			1,157	23명 이내	적정인원

※ 모집단위 및 정원은 교육부 및 대학의 대학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외국민 전형: 총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5년) 획득

※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교육인증 획득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3. 7. 3.(월) 10:00 ~ 7. 7.(금) 17:00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없음)
목회자추천서(신학과) 입력	2023. 7. 3.(월) 10:00 ~ 7. 10.(월) 17:00	목회자추천서(신학과) 온라인 입력 - 추천 목회자가 온라인으로 입력 후 저장(별도 제출 없음)
서류제출	2023. 7. 3.(월) 10:00 ~ 7. 10.(월) 17:00	등기 제출 - 등기우편: 7. 10.(월) 소인 인정
고사장 공지	2023. 7. 17.(월) 14:00 예정	- 개별통보 없음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psi.syu.ac.k)
면접고사	2023. 7. 27.(목)	해당 고사장(별도 안내)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합격자 발표	2023. 8. 17.(목) 14:00 예정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ipsi.syu.ac.k)
예치금 납부	2023. 12. 18.(월) 10:00 ~ 12. 21.(목) 16:00	별도 안내
등록금 납부	2024. 2. 7.(수) 10:00 ~ 2. 13.(화) 16:00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학정원 2%이내 전형

영주교포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3.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한 자
4. 영주권 취득 및 국내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야 함
5.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6.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영주교포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2. 주민등록 이민말소 확인서류(학생)
13.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해외 근무 공무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3.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헌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해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해외 상사직원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해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원본대조 확인본)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13.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로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로자의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로자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보호자의 재직 외국정부·국제기구 설립증명서류
13.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유치과학자 / 교수요원의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13.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12.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3. 체류국 발급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증명서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취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제출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 서류가 없거나 면세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4.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5.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자영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3년이상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자영업자의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체류국 발급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세금납부 사실 증빙 서류가 없거나 면세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3.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 선교사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학교, 검정고시 불인정)
2.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3년이상 선교활동한 선교사의 자녀
3.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4.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최소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중첩기간 기준)

구 분	최소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선교사의 자녀	3년	3년	각 1년 중 274일 이상	3년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3년	각 1년 중 244일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자

■ 제출서류

선교사의 자녀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8. 여권 사본(부, 모, 학생)
9.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또는 호(제)적 등본
10.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11. 해당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등록증 사본(해당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확인)
12. 해당 종교단체장이 발급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선교국 및 파견기간 명시)
13.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4. 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부모 이혼/사망: 부모 중 친권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유 발생 이전까지 전형의 기준요건(거주, 체류)을 충족해야 함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전형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지원자격

1. 국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홈스쿨, 사이버대학, 검정고시 불인정)
2.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
(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
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학생)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9. 여권사본(학생)

-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격

1.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학과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의 제출서류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로 제출을 대신함)
2. 지원자 종합기록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외 학교 학력조회 동의서(온라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4.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발행)
6.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7.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 ※ 모든 국외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 후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상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명시되어야 함
- ※ 신학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 ※ 신학과는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제출

전형방법

지원방법

1.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로 실시하며, 서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제1지망만 지원할 수 있음
3. 신학과는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았으며,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 제출(출석, 담임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퇴직 목회자는 추천 제한)

전형방법

전형구분		서류	면접	총점
전 학과(부)	재외국민(2% 이내)	20%(200점)	80%(800점)	100%(1,000점)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	100%(1,000점)	100%(1,000점)

선발방법

전형구분	선발방법
재외국민 (2% 이내)	■ 전체 지원자를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정렬한 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 만큼 선발함 ■ 면접고사 결시자,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 모집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모집단위별로 교육여건이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점 성적순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적정인원을 선발함 ■ 면접고사 결시자,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전형일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면접고사

1. 평가방법

모집계열	진행방법	면접시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반영비율
전 학과(부)	수험생별 면접위원 개별질문	7분 이내	기본소양	· 사회성 · 성실성 · 문제이해력 · 어휘력 · 태도	60%
			전공소양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전공선택 동기	40%

※ 면접평가는 지원자 이름, 수험번호, 출신학교 등의 항목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진행

2. 면접고사 유의사항

- 면접고사에 결시(포기)한 자는 불합격 처리됨
- 출신 고등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교복착용 금지
- 본인의 이름, 고교명, 출석교회명,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 직장명 등을 이야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격기준

■ 해외파견 근로자의 범위

구분	지원자격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교육, 연수(어학연수 포함),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는 제외)

■ 외국학교 인정기준

구분	지원자격
공 통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함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 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수학인정서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연한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 (영주교포, 해외근무자,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해외선교사, 자영업자, 현지법인근무자) 의 자녀	■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이상 재학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북한이탈주민	■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함

※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전·편입 과정이 아닌 재학기간 해당교의 정식 학칙에 의하여 조기졸업(예정)한 자 또는 외국과의 학제차이로 총 재학 년 수가 11년 6개월(1개 학기 범위 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인정기준

구분	지원자격
공 통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외국의 교육과정 인정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 (초·중등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초·중등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 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년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사항

-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4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입학허용기간(고교졸업 후 경과기간) 제한이 없음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지원 가능)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누락이 발생할 경우 상급 학년의 중복이수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재학기간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함
- 국내학교와 외국학교 간에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학기로 인정(연속학기 누락은 인정하지 않음)
- 그 밖의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학과 추가 제출서류
- 재외국민 - 출석교회 목회자 추천서(추천 목회자가 직접 온라인 입력) 1부
 - 침례증서(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확인서 1부

■ 이수학기 인정 관련 주요 사례

사례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여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23학기 이수 인정
																누락	A	A	A	A	A	A	A	A	A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누락과 중복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23학기 이수 인정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국내외 해외학교 간 1개 학기 이상 중복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중복 학기 중 1학기만 해외학교 이수 인정 → 해외 6학기 인정
																		A	A	A	A	A	A	A	A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해외학교 5학기 이수 → 지원자격 미달
																				A	A	A	A	A	A	
국내 초교 입학 후 해외 초교 입학	재학기간	D								D																전(후)교육 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국내 초교 입학 후 해외 초교 전학	재학기간	D																								전(후)교육 미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D: 국내학교 A: 해외학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전형료 및 환불

전형구분		전형료(원)
전형료	재외국민(2% 이내)	120,000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70,000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 (원서접수 수수료 공제)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③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④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단,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함

※ 신청 시기 별 환불 금액 기준

전형료 환불 신청기간	환불 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 온라인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50%
원서접수 마감 8일 이후부터 전형별 고사일 2일 전 까지	•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30%
전형일 이후	• 환불금액 없음

※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반환대상자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합격자는 입학전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3 기관에 의한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발급시점이 지원 자격과 관련 있는 경우(예: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서류도착 확인>메뉴를 통해 서류 제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해외에서 재학한 학교의 최종 재학 관련 서류(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인정 확인서 (아래방식 중 택1)	발급기관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당 학교 소재국 정부 지정기관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영사확인서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영사확인서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문의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아포스티유 확인전용 상담전화 : 02-2100-7600 /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 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 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모·본인 체류일수를 계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서(현지법인 근무자 및 자영업자 자녀), 부·모·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상 이름(영문 포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절차 및 방법

원서접수 → 마이페이지 → 출력물 → '[출력]제출서류 봉투표지'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한 후 해당란(□)에 '✓' 표시하고 발송

※ 등기우편 제출처 : (우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07호 입학처

재외 한국학교 안내(2021년 2월 기준)

국가명	학교명
일본	건국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동경한국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중국	광저우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연변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대만	까오슝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국학교, 젓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계	16개국 34개교

지원자 유의사항

모든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지원 및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1)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2)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3)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4)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5)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6)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다. 등록과 관련한 사항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포함)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3)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 5)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 2)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가.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3. 본교 지원 관련 사항

- 가. 본교 수시모집 전형에 중복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나.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입학전형 관련 이의신청 절차 안내
 - 1) 전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 본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합격·불합격 통지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본 이의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내부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의하여 그 결과를 개별통보합니다.
 - 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서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이의신청은 반드시 수험생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 가능)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신청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나 입학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2-3399-3377)
- 라.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가.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지침 및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의 종류: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형구분, 계열구분, 지원학과(부), 졸업일자, 수험번호, 주야 구분, 계열구분, 입시년도, 출신학교(최종학력구분, 재학·졸업학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추가연락처 및 관계, 환불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대입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나) 본교 입학 이후부터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학적업무 및 교육·연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안내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나) 이에 따라 본교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1)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3) 이에 따라 본교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안내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수능최저학력기준 추가 시 적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모집단위명: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등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진학어플라이	대입 원서접수 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1)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2) 이에 따라 본교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 1) 본교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본교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원활한 입학전형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제공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대상교 출신자(교육과정 등의 이유로 일부학교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교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확인 가능함
제공항목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실적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사항' 항목은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 사진 등 3개 세부 항목만 제공」

- 2)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는 출신고교에서 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국내 등기우편(우편 소인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3자 개인정보 동의 안내

- 1) 본교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위변조, 허위기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발급 기관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원서접수 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제3자 개인 정보 제공 내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당 시·도교육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합격자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지원자 성명, 본교 지원 모집단위, 주민등록번호, 합격지구, 합격일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해당 업무 목적 종료 시점까지

- 3)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4)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5년간의 대상기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 수시전형의 경우, 해당연도 2회차 합격자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음

바. 지원자 출신고교 합격여부 조회 제3자 개인정보 동의 안내

- 1) 지원자 출신고교에 합격여부 조회 요청 시 정보제공을 위해 원서접수 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내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자 출신고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당 고교출신 합격자에 대한 조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자 성명, 본교 지원 모집단위, 본교 지원 전형,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해당 업무 목적 종료 시점까지

- 3)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시 합격자 조회는 해당고교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학생활 안내

■ 학사제도 안내

1. 학과간 전과

가. 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전과의 제한

- 1)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5년제)는 2학년 및 3학년으로의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습니다(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음).
- 2) 전과는 2학년 1학기(3학기때) 초와 3학년 1학기(5학기때)초, 4학년 1학기(7학기) 및 4학년 2학기(8학기)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할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3)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를 이수한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0 이상이 되어야만 전과의 자격이 있습니다.

* 실기가 필요한 학과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 한 후 전과를 허용합니다.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 복수전공

- 1)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전 학년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복수전공 이수 후 2개 전공의 학위가 수여됩니다(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에서 제외).

나. 부전공

- 1) 전 학년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2) 부전공을 택한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5년제)는 부전공에서 제외).

3. 교직과정

- 교직과정 설치학과와 이수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직이수 신청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하며, 2학년 1학기 말에 성적, 인성, 교직, 적성 등을 종합하여 이수자를 선발합니다.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영어영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간호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 위 내용은 대학의 학사제도 변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교육관 안내

가. 입사자격

- 1) 본교 교육이념을 수용하고 생활교육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2) 2024학년도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나. 선발방법

지원자 중 서류전형과 거리(원거리우선), 사회적 배려자,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다. 시설현황

- 1) 수용 가능인원: 1,352명
(시온관 (남) 460, 에덴관 (여) 438, 살렘관 (남) 227, 브니엘관 (여) 227)
- 2) 건물 현황
숙소 4개동(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식당 1동, 장애인실, 휴게실, 체력관리실, 심화학습실, 세탁실, 채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각 방에는 온라인전용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 입사비용 한 학기(2023년 1학기 기준) * 식비별도

- 4인 1실 기준: 782,000원(관리비: 672,000원, 자치회비: 10,000원, 입사비: 100,000원)
 3인 1실 기준: 934,000원(관리비: 824,000원, 자치회비: 10,000원, 입사비: 100,000원)
 2인 1실 기준: 1,318,000원(관리비: 1,208,000원, 자치회비: 10,000원, 입사비: 100,000원)
 1인 1실 기준: 2,294,000원(관리비: 2,184,000원, 자치회비: 10,000원, 입사비: 100,000원)

마. 기타 문의사항

입사전형 일정 및 등록기간 등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 해당 생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문의 : house@syu.ac.kr
- 전화문의 시간 및 안내 (평일 오전 9시 ~ 오후 15시까지)
 - 시온관(남) ☎ 02-3399-3667 FAX: 02-3399-3671
 - 에덴관(여) ☎ 02-3399-3668 FAX: 02-3399-3522
 - 브니엘관(여) ☎ 02-3399-3679
 - 살렘관(남) ☎ 02-3399-3662 FAX: 02-3399-3663
 - 신학숙 ☎ 02-3399-3667 FAX: 02-3399-3671

신입생 등록금 안내

본교의 2023학년도 등록금은 아래와 같으며, 2024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물가인상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모집단위	2023학년도 등록금
	수업료
신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유아교육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글로벌한국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3,579,000
화학생명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4,111,000
건축학과,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학부, 바이오융합공학과	4,331,000
아트앤디자인학과, 음악학과	4,614,000
체육학과	4,259,000
약학과	5,021,000

학과사무실 및 행정부서 전화번호 안내

학 과	전화번호	학 과	전화번호	행정부서	전화번호
간호학과	02-3399-1593	신학과	02-3399-1513	학생처 (장학금)	02-3399-3225
건축학과	02-3399-1856	아트앤디자인학과	02-3399-1835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02-3399-3226
경영학과	02-3399-1566	약학과	02-3399-1616	학사지원팀	02-3399-3153
글로벌한국학과	02-3399-1663	영어영문학과	02-3399-1533	재무실(등록금)	02-3399-3443
동물자원과학과	02-3399-1761	유아교육과	02-3399-1576	교목처(채플)	02-3399-3333
물리치료학과	02-3399-1638	음악학과	02-3399-1818 02-3399-1819	장애학생지원센터	02-3399-3238
바이오융합공학과	02-3399-1951	인공지능융합학부	02-3399-1804	국제교육원	02-3399-3602
보건관리학과	02-3399-1673	컴퓨터공학부	02-3399-1790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02-3399-3182
사회복지학과	02-3399-1671	빅데이터클라우드학과		취업진로지원센터	02-3399-3232
상담심리학과	02-3399-1679	항공관광외국어학부	02-3399-1546 02-3399-1549	인성교육원	02-3399-3075
체육학과	02-3399-1691	화학생명과학과	02-3399-1710	여기숙사	02-3399-3668
식품영양학과	02-3399-1654	환경디자인원예학과	02-3399-1742	남기숙사	02-3399-3667